

4.3.20 계약학과설치·운영규정

제정 2010. 11. 29.
개정 2013. 02. 26.
개정 2014. 11. 03.
개정 2016. 02. 18.
개정 2017. 01. 19.
개정 2017. 02. 22.
개정 2018. 01. 25.
개정 2018. 07. 26.
개정 2018. 12. 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초당대학교 학칙 제38조에 의거하여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2014.11.03>

제2조(학위과정) 계약학과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03>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2.26.>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그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입 학

제4조(입학자격)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5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서류전형에 의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 필답, 실무경력 평가 등 별도의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따라 정한다.

제3장 학기·수업

제6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나누고 따로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제7조(수업)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50%이상)·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07.26>

제4장 교육과정 이수·수료·졸업 <제목변경 2016.02.18>

제8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며, 세부사항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이수한다.

제9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산업체 경력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01.19>

② 교육과정 이수 인정 절차는 산업체 경력 학점인정 기준<별표2>에 따라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1.19>

제10조(수료학점 및 졸업) ① 계약학과 등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및 졸업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에 준한다. <개정 2016.02.18>

②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1),(2),(3)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5장 계약학과 운영·관리

제11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① 설치·운영기간은 학사과정은 4년(편입은 2년 이상),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03>

②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 대학원 및 교무처장(대학원은 대학원장)과 사전협의 후 기획위원회(대학원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계약학과 학생은 계약기간 내에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6.2.18.>

제12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명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운영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은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하고, 본 대학교 교원 4명과 계약기관장이 추천한 인사 및 학생 2인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6.2.18.>

제13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의 운영 및 학사관리는 이미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계약학과에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계약학과의 총괄 학사행정 지원은 교무처장(대학원은 대학원장)이 수행하며, 관련부서는 필요한 학사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5조(등록금의 납부)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의 규정(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의한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군간 자매결연 등에 의해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16조(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을 위탁받은 학(부)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 이수를 완성한다.

② 계약학과 입학 후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14.11.03, 2016.2.18>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2.18>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2.18>

⑤ 계약학과의 학생이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등 신분이나 지위에 변동이 있거나 위탁단체와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8>

제6장 보 칙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00-공용 호

학 위 증

김 초 당 Chodang, Kim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아래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전 공: 00학(00학사)
00학(00학사)
00학(00학사)
부전공: 00학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홍길동

학위번호: 초당000000(석(박)0000000호)

제 00-공용 호

학 위 기

김 초 당 Chodang, Kim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과정 학과(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공학박사

홍길동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함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홍길동

학위번호:초당000000(석(박)0000000호)

<별표1> 계약학과 편성 및 정원 <개정 2017.01.19., 2017.02.22., 2018.01.25. 2018.12.04>

학과명	학위과정	입학구분	정원(명)	설치기간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석사	신입	100	2018.03.01.~ 2020.02.29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사	편입	80	2018.03.01.~ 2020.02.29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석사	신입	100	2019.03.01.~ 2021.02.29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사	편입	60	2019.03.01.~ 2021.02.29

<별표2> 계약학과 산업체 경력 학점인정 기준 <신설 2017.01.19>

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학점인정	3학점	6학점	9학점

※ 경력자 인정과목은 교과편성표 내의 과목에서 경력인정에 해당되는 과목의 해당 학점만 인정.

계약학과 교육과정 이수 인정신청서(학생용)

20 학년도 제 학기 신·편입학(계약학과)	
학 과 :	학 번 :
성 명 :	
근무경력(전체)	신 청 학 점
연 락 처	(☎) (HP)
<p>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제 학기 학과(계약학과)에 신·편입학하였기에 「초당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세부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4장 교육과정 이수·수료·졸업 제9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1항」에 의거,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첨부서류 :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산업체 경력증명서 1부</p>	

교육 과정 이수 인정				
근 무 경 력		인정학점	학과장	비 고
근무기간	산업체명			
		학점	(인)	
		학점	(인)	
		학점	(인)	
합 계				

◎계약학과 산업체 경력 학점인정 기준표◎

근 무 경 력	6개월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이수인정 학점	3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계약학과 교육과정 이수 인정요청서(학과용)

1. 계약학과의 명칭 :

2. 조건표

학 번	성 명	산업체명	근무경력	인정학점

* 근무경력은 개별 산업체별로 월, 일까지 계산하여 산정

3. 인정요청사유 : 「초당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세부규정」

「계약학과설치·운영규정」

제4장 교육과정 이수·수료·졸업 제9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1항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교육과정 이수 인정을 요청합니다.

첨부 : 1. 계약학과 교육과정 이수 인정신청서(학생용)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산업체 경력증명서 1부.

4. 교육과정표 1부. 끝.

20 년 월 일

학과장

(인)

초 당 대 학 교 총 장 귀하